



“국민 중심의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개선방안 안내

1. 관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19조, 방역관리과-8686(2015.12.07.), 8960 (2015.12.21.), 647(2016.01.28).

2.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새롭게 도입된 HACCP 지도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오니 각 기관·단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사 및 농가 등에게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는 개선방안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6개소)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대한한돈협회, 한경대학교(축산위생교육원), 제주대학교(수의과학연구소), 대한수의사회

불임 :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개선방안 1부. 끝.



수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장(농식품산업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축산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도지사(축산과장), 충청북도지사(축산과장), 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 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 전라남도지사(축산과장), 경상북도지사(축산경영과장), 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축산정책과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사)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사)한국육계협회장, (사)한국오리협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축산물위생교육원장), 낙농진흥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축산유통부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축산경영부장), 전국한우협회장, 대한한돈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장, 한경대학교총장, 제주대학교총장, 대한수의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위생안전과장)

주무관	정순일	서기관	출장	방역관리과장	전결 2016. 2. 18.
------------	-----	-----	----	--------	-----------------

김용상

협조자

시행 방역관리과-1116 (2016. 2. 18.) 접수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전화번호 044-201-2282 팩스번호 044-868-0469 / jeongsoonil@korea.kr / 대국민 공개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에 따라 2016.7.1.부터 HACCP 지도관 지명 및 이에 따른 지도관 관련 교육 실시 필요
- '15년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조사·평가 결과 도축장 및 집유장의 HACCP 운용 책임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 필요
- 축산물위생교육 및 인증심사에 대한 관리가 일부 미흡하여 타 분야 교육과정 이수 또는 교육수료증 인정 사례 발생

□ 향후계획

- HACCP 지도관 교육과정 개설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개설
 - '16년에는 상반기 중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후 하반기 교육 및 '17년도 교육과정 개설은 추후 재검토
 - 교육과정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개설 (교육시간 : 2박 3일 내외)
 - * 교육과목 및 내용, 시간, 소요예산 등 세부사항은 농식품부(방역관리과 및 검역본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16.2월말까지 세부계획 제출)
- 도축장·집유장 HACCP 전문 교육과정 개설
 -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교육원에서 년 2회 이상 교육과정 개설
 - 집유장은 수의사회에서 기존 책임수의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개설
 - 교육과정은 영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설(교육시간 : 1박 2일 내외)
 - * 교육과목 및 내용, 시간, 교육실시비용 등 세부사항은 농식품부(방역관리과 및 검역본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16.2월말까지 세부계획 제출)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 대한 축산물위생 교육계획 승인시 각 과정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승인
 - '16년도부터는 도축장 및 집유장 HACCP 운용 평가시 전문 교육 과정 수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 진행
 -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개선방안 및 자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도 실시
 - HACCP 지도관 지정 대상자 및 교육 이수현황 제출(지정 대상자, 지정 대상자 중 교육 이수자,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16.2.29일까지 제출)
- 생산단계(농장·도축장·집유장)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는 각 과정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승인을 받을 것
 -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교육을 수강하지 않도록 교육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강신청 단계에서부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보완 조치
 - * 대상(6개소)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대한한돈협회, 한경대학교(축산위생교육원), 제주대학교(수의과학연구소), 대한수의사회
 - * 축산물 영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농장분야 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을 인증 심사 및 연장시 제출하는 사례 방지 필요
 - 교육 수료증에 해당 분야 이외에는 교육실적을 인정 받지 못함을 안내하여 타 분야 인증 심사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조치
 - 농장분야 교육대상자가 축산물 영업자 분야 교육을 이수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및 안내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공·유통단계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서 농장·도축장·집유장 대상자를 교육하지 않도록 안내 및 지도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농장 인증 및 연장 심사시 농장분야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심사 강화 추진
 - * 농장에 해당하는 자가 축산물 영업자 분야 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을 인증 심사 및 연장시 제출하는 사례 방지 필요
- 시·도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자료 제출
 - 관내 도축장 및 집유장의 HACCP 운용 책임자는 반드시 도축장·집유장 HACCP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안내
 - * 농장 또는 타 축산물 영업자 HACCP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금년도 평가부터는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안내
 - * 도축장·집유장 HACCP 전문 교육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HACCP 지도관 지정 대상자 및 교육 이수현황 제출(지정 대상자, 지정 대상자 중 교육 이수자,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16.2.29일까지 제출)
 - * 지도관 지정 대상은 도축장·집유장 인허가 및 사후관리 담당자와 HACCP 운용 조사·평가 업무 담당자임
 - * 교육이수자는 2015.10.6. 이전에 HACCP 관련 교육을 총 5일 이상 이수한 경우